

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-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구 본청, 동사무소, 보건소의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.

II. 주요골자

- 가.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대에 따라 구 본청의 일반직 5급 1명과 6급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9급 정원 11명을 감축 함.
- 나. 동사무소의 정원 162명을 현원과 일치하도록 78명을 증원하여 240명으로 정하고 구 본청 정원을 78명 감축 함.
- 다. 환경위생과의 위생기능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소 정원을 14명 증원하고 구 본청 정원을 14명 감축 함

III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에 따라, 소관 분장사무에 필요한 인력을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간 정원을 재조정하여 정원관리기관별로 재배치한 사항입니다.
- 먼저 직급간 정원조정 내용을 보면, 1개과 증설에 따른 일반직 5급 1명과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설치 등으로 추가로 필요한 팀장요원 18명(142팀 → 160팀) 중 현 정원내 무보직 6급을 제외한 10명을 증원하고, 대신 9급 정원을 11명 감축하였는 바,

※ 직급별(일반직) 정원기준 및 조정 현황

(단위:명)

직 급 별 정원기준	일반직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	총 888명	8명 이내	62명 이내	168명 이내	257명 이내	275명 이내	116명 이상
현 행	888	8	51	168	257	275	129
조 정	888	8	52	178	257	275	118
증(Δ)감	-	-	+1	+10	-	-	Δ 11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[별표 5]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표에 의하면 일반직 6급의 경우 정원기준을 초과한 것이나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울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수 있고(동조제4항),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직급간 정원조정을 함에 있어 시장이 최대한 협조토록 지침(2006. 4. 19, 자치제도팀-1418)을 시달한 바도 있으므로, 서울시와 미리 협의한 범위내에서 증원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.

- 다음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내용을 보면,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일반행정·민원 업무 중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현행 동사무소 정원을 현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, 환경위생과의 위생기능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소 정원을 증원하고 대신 본청 정원을 감축한 것이어서 정원관리에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.

※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현황

(단위:명)

구 분	총 정원	집행기관				구의회 사무국
		소 계	본 청	보건소	동사무소	
현 행	1,259	1,233	998	73	162	26
조 정	1,259	1,233	906	87	240	26
증(Δ)감	-	-	Δ 92	+ 14	+ 78	-

다만,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확보과정에서 팀장 포함하여 기존의 행정직 인력 4~5명 정도를 전환배치하여 충원하였는데, 업무의 주요내용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비롯하여 저소득·노인·장애인, 모·부자가정 및 아동·보육 등 복지수요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

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는 만큼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, 향후 사회복지분야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.

- 참고로 직급별 정원기준 및 세부적인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조정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.

IV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

제10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19486호)

제13조 (정원책정의 일반기준)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,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2. 시·군·구의 경우 : 본청, 의회사무국·사무과, 합의회행정기관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, 자치구가 아닌 구, 읍·면·동 및 그 출장소

제15조 (정원의 관리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6조 (별정직 정원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, 미리 각 직무분야별·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, 그 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

제20조 (직급별 정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
제21조 (정원의 규정)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부령 제310호)

제8조 (정원채정기준)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[별표 5]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

1. 일반직공무원

나. 시·군·자치구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자치구	1%이내	7%이내	19%이내	29%이내	31%이내	13%이상

- 비고 : 1.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읍·면·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 2.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% 이내, 7급을 30% 이내로 한다.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자치구	3%이내	6%이내	14%이내	32%이내	45%이상

- 비고 :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읍·면·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5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자치구	-	7%이내	19%이내	48%이내	24%이내	2%이상

- 비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 2. 시, 군,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, 면,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정원채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채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·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와의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직급별 정원기준 및 조정 대비표

구 분	직급별기준 (행자부령)	현 행	개 정 후					증 감	
			계	본 청	보건소	동	구의회	현행 대비	기준 대비
총 계	1,259	1,259	1,259	906	87	240	26	-	-
구 청 장	1	1	1	1				-	-
일반직 계	(888)	888	888	601	71	202	14	-	-
4급이상	8명이내	8	8	6	1		1	-	적합
5급	62명이내	51	52	25	6	19	2	+1	적합
6급	168명이내	168	178	121	16	38	3	+10	+10
7급	257명이내	257	257	171	26	56	4	-	적합
8급	275명이내	275	275	193	19	60	3	-	적합
9급	116명이상	129	118	85	3	29	1	△11	적합
별정직 계	(14)	14	14	8			6	-	-
5급상당	-	-	-					-	-
6급상당	2명이내	3	3	3				-	+1
7급상당	6명이내	8	8	4			4	-	+2
8급상당	3명이내	2	2	1			1	-	적합
9급상당	1명이상	1	1				1	-	적합
기능직 계	(356)	356	356	296	16	38	6	-	-
6급	10명이내	-	-					-	적합
7급	21명이내	15	15	13		2		-	적합
8급	49명이내	37	37	29	3	5		-	적합
9급	113명이내	84	84	68	2	12	2	-	적합
10급	161명이상	220	220	186	11	19	4	-	적합

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조정 대비표

현							개						
서울특별시중로구청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정원표(제3조 관련)							서울특별시중로구청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정원표(제3조 관련)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집행 기관				구의회 사무국	기관별 직급별	총 계	집행 기관				구의회 사무국
		소 계	본 청	보건소	동				소 계	본 청	보건소	동	
총 계	1,259	1,233	998	73	162	26	총 계	1,259	1,233	906	87	240	26
정무직 계	1	1	1				정무직 계	1	1	1			
구청장	1	1	1				구청장	1	1	1			
일반직 계	888	874	654	58	162	14	일반직 계	888	874	601	71	202	14
3급	1	1	1				3급	1	1	1			
4급	7	6	5	1		1	4급	7	6	5	1		1
5급	51	49	24	6	19	2	5급	52	50	25	6	19	2
6급	168	165	132	14	19	3	6급	178	175	121	16	38	3
7급	257	253	180	20	53	4	7급	257	253	171	26	56	4
8급	275	272	212	15	45	3	8급	275	272	193	19	60	3
9급	129	128	100	2	26	1	9급	118	117	85	3	29	1
별정직 계	14	8	8			6	별정직 계	14	8	8			6
6급 상당	3	3	3				6급 상당	3	3	3			
7급 상당	8	4	4			4	7급 상당	8	4	4			4
8급 상당	2	1	1			1	8급 상당	2	1	1			1
9급 상당	1					1	9급 상당	1					1
기능직 계	356	350	335	15	0	6	기능직 계	356	350	296	16	38	6
7급	15	15	15		0		7급	15	15	13		2	
8급	37	37	35	2	0		8급	37	37	29	3	5	
9급	84	82	80	2	0	2	9급	84	82	68	2	12	2
10급	220	216	205	11	0	4	10급	220	216	186	11	19	4